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3년 7 월 11 일

여 수 시 장 정기명 인

여수시 조례 제1920호

붙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920호

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2항 중**"폐기물관리업무"**를 **"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"**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반입·처리대상 폐기물)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·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수시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,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1. 생활폐기물 2. 공사장 생활폐기물 3. ~ 5. (생 략)	**제4조(반입·처리대상 폐기물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삭제 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간사 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의 간사는 **폐기물관리업무**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**폐기물관리업무**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	**제26조(간사 등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 **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** -- ---------- **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** ----------